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부천대장지구 A2BL)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548세대 (전용면적 59㎡,74㎡,84㎡ 548세대)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2-322-0548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경기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국민주택 (공공분양)	경기도 부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11.12.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6.05.12.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3년	적용	공공택지 (공공주택지구, 대규모택지개발지구)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11.12.(목)	2026.11.23.(월)	2026.11.24.(화)	2026.11.25.(수)	2026.12.01.(화)	2026.12.04.(금) ~ 2026.12.11.(금)	2027.01.25.(월) ~ 2027.01.29.(금)

■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 (대장지구 A2블록)는 분양 상담 전화(☎032-322-0548)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 자산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청약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부적격 처리 혹은 불이익 부과)되며,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자격상향지원 등)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은 LH와 남광토건(주)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으로써, 청약 등과 관련한 일체의 문의는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 견본주택(☎032-322-0548)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청약통장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집단대출이 현재 미정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종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6.11.11.)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12.(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457**이며, **공고문은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 홈페이지(https://www.부천대장하우스토리디센트.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관람 안내**

- 견본주택 개관은 **2026.11.13.(금) 10:00입니다.**
- **견본주택 내 견본주택은 59A, 84A타입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되지 않은 59B, 59C, 74A타입은 반드시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견본주택 관람이 어려울 경우에도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 참고)**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 견본주택**

*** 견본주택 관람 일정**

대 상	구 분	방문 일정	주 소	기 타
일반고객	일반관람	2026.11.13.(금) ~ 2026.11.22.(일) (10:00 ~ 17: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 견본주택	*** 기간 내 주말, 공휴일 관람 가능** *관람 및 상담 시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 ☎ 032-322-0548**

- **청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 내 실제 건립세대 촬영 영상 및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실물 견본 세대를 관람하지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https://www.부천대장하우스토리디센트.com**)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청약홈)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기관추천(국가유공자포함) 확정대상자는 불가)**,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부천시 1년 이상(2025.11.12.이전) 거주하는 신청자가 부천시 1년 미만(2025.11.13.이후)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부천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25조, 제34조에 의거 **지역우선 공급기준(11페이지)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 또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25.11.12.**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2) **'25.11.12.**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신청자격 **검증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지역균형발전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1순위자)	추첨공급
무주택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부적격당첨제한 등	세대구성원 지역균형특별공급 제2호 외국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									
세대주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과거 주택소유이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대구성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입주자저축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불필요	불필요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이상) ※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1순위자]**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이상) **[2순위자]** 신청자 본인(가입자)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이상)	신청자 본인 (가입자)
소득	해당 없음	해당없음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200%) ※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자산(부동산, 자동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신청이 가능 (전환 해지를 이미 신청한 종전 저축으로는 청약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

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의거 거주의무가 3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단,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주택법」제64조, 「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별표3
거주의무	거주의무 개시일	3년 (단,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3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함.)	「주택법」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 호(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호의 경우 신청 가능)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공 고	접 수			당첨자발표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일 정	2026.11.12.(목)	2026.11.23.(월)	2026.11.24.(화)	2026.11.25.(수)	2026.12.01.(화)	2026.12.04.(금) ~ 2026.12.11.(금)	2027.01.25(월) ~ 2027.01.29(금)
장 소	•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 견본주택(10:00~14:00)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09:00 ~ 17:30)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 Home" 검색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09:00 ~ 17:30)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 Home" 검색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 견본주택 (10:00 ~ 17:30)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 따라서, **현장계약**

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사업주체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 바랍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전매계약서 등은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할 때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청약과열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습니다.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공급유형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 가능

1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1. 공급규모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
■ **공급규모 : 공공분양주택 지하 2층 ~ 지상 15층, 8개동 전용면적 85㎡ 이하 548세대(특별공급 466세대, 일반공급 82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1-2.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택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발코니		세대별 대지 지분 (㎡)	공급세대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확장 여부	면적 (㎡)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신생아	국가 유공자	기관 추천	지역 균형 발전	소계		
2026000457	합계											548	55	55	82	27	110	27	55	55	466	82	41
	01	059.7100A	59A	59.7100	21.3869	7.2850	41.1981	129.5800	확장	33.80	44.2178	242	24	24	36	12	49	12	24	24	205	37	17
	02	059.9900B	59B	59.9900	21.4872	7.3192	41.3913	130.1877	확장	31.11	44.4251	126	13	13	19	6	25	6	13	13	108	18	9
	03	059.9900C	59C	59.9900	21.4872	7.3192	41.3913	130.1877	확장	31.13	44.4251	14	1	1	2	1	3	1	1	1	11	3	1
	04	074.9800A	74A	74.9800	26.8563	9.1481	51.7340	162.7184	확장	36.82	55.5259	50	5	5	8	2	10	2	5	5	42	8	6
	05	084.9500A	84A	84.9500	30.4274	10.3645	58.6130	184.3549	확장	38.42	62.9091	116	12	12	17	6	23	6	12	12	100	16	8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면적 등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모형, 팸플릿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동·호는 당첨자 주택 선정 시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

※ 청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그 밖의 공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되며, 지하주차장 슬래브는 콘크리트 라멘 및 PC구조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29년 06월 입니다.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사업자 남광토건(주), 중흥토건(주), (주)케이알산업, 극동건설(주), 씨앤씨종합건설(주)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며, 시공업체는 남광토건(주), 중흥토건(주), (주)케이알산업, 극동건설(주), 씨앤씨종합건설(주)입니다.

1-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단위 : 원, 세대]

주택형	약식 표기	층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60%)						잔금(30%)	
					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시 (주택도시기금 제외금액)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027.03.24.)	(2027.08.18.)	(2028.01.19.)	(2028.06.21.)	(2028.11.22.)	(2029.04.18.)		
059.7100A	59A	1층	8	576,640,000	57,664,000	57,664,000	57,664,000	57,664,000	57,664,000	57,664,000	57,664,000	117,992,000	55,000,000
		2층	17	582,770,000	58,277,000	58,277,000	58,277,000	58,277,000	58,277,000	58,277,000	58,277,000	119,831,000	55,000,000
		3층	17	595,040,000	59,504,000	59,504,000	59,504,000	59,504,000	59,504,000	59,504,000	59,504,000	123,512,000	55,000,000
		4층	17	607,310,000	60,731,000	60,731,000	60,731,000	60,731,000	60,731,000	60,731,000	60,731,000	127,193,000	55,000,000
		5층 이상	183	613,450,000	61,345,000	61,345,000	61,345,000	61,345,000	61,345,000	61,345,000	61,345,000	129,035,000	55,000,000
059.9900B	59B	1층	1	578,280,000	57,828,000	57,828,000	57,828,000	57,828,000	57,828,000	57,828,000	57,828,000	118,484,000	55,000,000
		2층	8	584,440,000	58,444,000	58,444,000	58,444,000	58,444,000	58,444,000	58,444,000	58,444,000	120,332,000	55,000,000
		3층	9	596,740,000	59,674,000	59,674,000	59,674,000	59,674,000	59,674,000	59,674,000	59,674,000	124,022,000	55,000,000
		4층	9	609,040,000	60,904,000	60,904,000	60,904,000	60,904,000	60,904,000	60,904,000	60,904,000	127,712,000	55,000,000
		5층 이상	99	615,200,000	61,520,000	61,520,000	61,520,000	61,520,000	61,520,000	61,520,000	61,520,000	129,560,000	55,000,000
059.9900C	59C	2층	1	584,390,000	58,439,000	58,439,000	58,439,000	58,439,000	58,439,000	58,439,000	58,439,000	120,317,000	55,000,000
		3층	1	596,690,000	59,669,000	59,669,000	59,669,000	59,669,000	59,669,000	59,669,000	59,669,000	124,007,000	55,000,000
		4층	1	608,990,000	60,899,000	60,899,000	60,899,000	60,899,000	60,899,000	60,899,000	60,899,000	127,697,000	55,000,000
		5층 이상	11	615,150,000	61,515,000	61,515,000	61,515,000	61,515,000	61,515,000	61,515,000	61,515,000	129,545,000	55,000,000
074.9800A	74A	2층	4	716,510,000	71,651,000	71,651,000	71,651,000	71,651,000	71,651,000	71,651,000	71,651,000	139,953,000	75,000,000
		3층	6	731,600,000	73,160,000	73,160,000	73,160,000	73,160,000	73,160,000	73,160,000	73,160,000	144,480,000	75,000,000
		4층	6	746,680,000	74,668,000	74,668,000	74,668,000	74,668,000	74,668,000	74,668,000	74,668,000	149,004,000	75,000,000
		5층 이상	34	754,230,000	75,423,000	75,423,000	75,423,000	75,423,000	75,423,000	75,423,000	75,423,000	151,269,000	75,000,000
084.9500A	84A	1층	4	802,810,000	80,281,000	80,281,000	80,281,000	80,281,000	80,281,000	80,281,000	80,281,000	165,843,000	75,000,000
		2층	8	811,350,000	81,135,000	81,135,000	81,135,000	81,135,000	81,135,000	81,135,000	81,135,000	168,405,000	75,000,000
		3층	8	828,430,000	82,843,000	82,843,000	82,843,000	82,843,000	82,843,000	82,843,000	82,843,000	173,529,000	75,000,000
		4층	8	845,510,000	84,551,000	84,551,000	84,551,000	84,551,000	84,551,000	84,551,000	84,551,000	178,653,000	75,000,000
		5층 이상	88	854,060,000	85,406,000	85,406,000	85,406,000	85,406,000	85,406,000	85,406,000	85,406,000	181,218,000	75,000,000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동 · 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분양가는 층별,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견본주택 및 사이버견본주택 등으로 공급가격, 동 · 호 배치도, 타입별 평면도 및 면적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융자금(주택도시기금) 안내>

※ 해당 주택은 사업주체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 ·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사업주체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공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개별 지정 된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4.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비용 안내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동 · 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 · 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공급가격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	계약시	2027.03.24.	입주지정일
59A	6,612,000	661,200	1,322,400	4,628,400
59B	5,865,000	586,500	1,173,000	4,105,500
59C	6,870,000	687,000	1,374,000	4,809,000
74A	7,447,000	744,700	1,489,400	5,212,900
84A	8,115,000	811,500	1,623,000	5,680,500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안내(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계약 체결 후 자재조달 및 세대공사 등 공사여건 상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타입)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별도의 행위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각 주택형(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타입)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 설치 공간 및 수전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확장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견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실 등은 제외)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인접 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되거나 실내공간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라 저층부 석재 적용 구간 및 시공 상세 등이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샤시 설치기준은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 배관 설치 등으로 벽 또는 천장의 마감재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상품개선을 위한 것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세대 내 가구(일반, 주방) 배면, 벽, 바닥, 천장에는 시공 선후 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목창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급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으로 인한 인접세대 피해시에는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골조와 이질 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 등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모든 자재는 본 공사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신제품개발,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동질, 동가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세대 내 조명기구, 분전함, 콘센트, 설비 및 배선기구류, 바닥배수, 가스미터기, 가스차단밸브, 배수 배관 겸용 배수구, 수전류, 휀 및 각종 점검구 등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두께, 위치, 개폐방향, 색상 유리두께, 제품, 제조사 등은 외부 입면계획 및 인허가 결과에 따라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층별 및 라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폭, 면적 등은 인허가 과정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 발코니의 외벽은 단열재 추가 설치시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각실 천장 및 화장실 천장의 높이는 설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인테리어 마감에 사용된 석재류, 타일류 등의 표면상 문양 및 크랙은 자재 자체의 물성 및 특성을 미려하게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 컨셉이므로 하자가 아닙니다.
※ 본 공사시 가구의 후면, 측면, 바닥, 천장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취부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선택	설치대수	구성	판매가격	비고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59A	선택1	실내기 2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	4,120,000	74A/84A 주방 공간옵션 미선택 시 선택3 선택 가능
		선택2	실내기 4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260,000	
	59B	선택1	실내기 2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	4,120,000	
		선택2	실내기 4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260,000	
	59C	선택1	실내기 2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	4,120,000	
		선택2	실내기 4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260,000	
	74A	선택1	실내기 2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	4,240,000	
		선택2	실내기 4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700,000	
		선택3	실내기 5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8,650,000	
	84A	선택1	실내기 2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	4,470,000	
		선택2	실내기 4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860,000	
		선택3	실내기 5대/실외기 1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8,780,0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격은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공기청정기능이 없는 일반형으로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공정상의 사유로 계약 이후 추가, 변경, 해지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 및 모델은 미선정으로 추가선택품 판매시 안내 할 예정입니다. 추가선택품 판매시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 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단종(성능개선, 디자인 변경 등의 사유)시 동 제조사의 동급 이상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조사의 제품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수준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고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으며, 입주 전에 안내형식으로 고지합니다.

▪ 현관 중문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9A	59B	59C	74A	84A	
공통/현관	현관 중문+신발장 하부조명	현관 중문(3연동 타입)+신발장 하부조명		1,420,000		1,480,000	1,490,000	-
		현관 중문(스윙 타입)+신발장 하부조명	1,480,000		1,480,000			-

※ 현관중문은 장식용 도어로, 차음 및 단열 성능의 기능상 도어가 아닙니다.

▪ 공간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9A	59B	59C	74A	84A	
침실	침실 학습강화형	침실2+멀티룸+슬라이딩도어+복도팬트리+팬트리등	1,780,000		1,780,000			-

2,3		침실3+멀티룸+슬라이딩도어+복도팬트리+팬트리등		1,780,000				-
	침실 공간강화형	침실통합+반침장+복도장식장	2,430,000	2,430,000	2,430,000			-

■ **주방 스타일업**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9A	59B	59C	74A	84A	
주방	기본형	스타일업 주방1 (마감재 업그레이드)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광폭 싱크볼+고급 주방수전 상부장 하부조명	2,280,000	2,390,000	2,400,000	2,500,000	2,670,000	-
		스타일업 주방2 (마감재 업그레이드)	주방 벽/상판 세라믹타일 광폭 싱크볼+고급 주방수전 상부장 하부조명	3,830,000	3,840,000	3,840,000	4,190,000	4,430,000	-
	공간 강화형	스타일업 주방1 (평면/마감재 업그레이드)	대형주방팬트리 / 주방 및 아일랜드 연장 / 주방 장식장 스타일업 주방1 조명특화 / 팬트리시스템선반 / 벽 가구패널				5,080,000	5,670,000	-
		스타일업 주방2 (평면/마감재 업그레이드)	대형주방팬트리 / 주방 및 아일랜드 연장 / 주방 장식장 스타일업 주방2 조명특화 / 팬트리시스템선반 / 벽 가구패널				6,810,000	7,870,000	-
	수납 강화형	스타일업 주방1 (평면/마감재 업그레이드)	대형주방팬트리 / 주방 연장 / 복도팬트리 / 주방장식장 스타일업 주방1 조명특화 / 팬트리시스템선반 / 벽 가구패널				5,200,000	5,760,000	-
		스타일업 주방2 (평면/마감재 업그레이드)	대형주방팬트리 / 주방 연장 / 복도팬트리 / 주방장식장 스타일업 주방2 조명특화 / 팬트리시스템선반 / 벽 가구패널				6,890,000	7,910,000	-
	빌트인 냉장고		BI 냉장고 / 냉동고 / 김치냉장고 + 소물장	6,660,000	6,690,000	6,690,000	6,780,000	6,800,000	-
	3구 인덕션 쿡탑		경동 / 나비엔매직 ERI-5553	590,000	590,000	590,000	590,000	590,000	-
	빌트인 식기세척기		삼성 / DW80F71Y1SEW	1,120,000	1,120,000	1,120,000	1,120,000	1,120,000	-

※ 선택하는 주방상판 마감재에 따라, 하부장의 높이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주방상판/벽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공사시 패턴, 색상이 다를 수 있으며, 분절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전 선택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타입)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가전옵션 계약 체결 이후 가전옵션 제품 특성상 시장 판매가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차액이나 감액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일부품목은 주택형(타입)별 사양이 다르므로, 해당 주택형(타입)의 형태를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스타일업**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9A	59B	59C	74A	84A	
욕실	복합 환풍기 (욕실1+욕실2)	힘펠 / FHD2-C150P_NOVA	820,000	820,000	820,000	820,000	820,000	-
	욕실 스타일업 (마감재 업그레이드) (욕실1+욕실2)	포세린 벽타일/고급형 위생도기/ 수전/악세서리/샤워부스/ 비데일체형 양변기/욕실장 하부 간접조명	3,670,000	3,670,000	3,670,000	3,670,000	3,670,000	-

※ 욕실 스타일업 유상옵션 선택시, 상부장 하부에는 조명이 설치되며, 스위치 회로의 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뒷선반은 본공사시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색상 및 패턴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별 / 아이템별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위치지정 및 마감재 선택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조명 스타일업**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9A	59B	59C	74A	84A	
조명	조명 스타일업 1	거실 : 우물천장 4면 우물천장 일체형 직간접 조명 (디밍/색온도 조절 포함) 주방 : 슬림형 싱크대 상부등+우물천장+간접등 침실 : 직부등+간접조명 (감성등) 거실/침실 : 커튼박스 간접조명 설치	2,470,000	2,460,000	2,480,000	2,610,000	2,940,000	74A/84A 주방 공간옵션 미선택 시 선택 가능
	조명 스타일업 2	거실 : 우물천장 4면 우물천장 일체형 직간접 조명 (디밍/색온도 조절 포함) 침실 : 직부등+간접조명 (감성등) 거실/침실 : 커튼박스 간접조명 설치				2,020,000	2,290,000	주방 공간강화형 옵션 선택 시 선택 가능
	조명 스타일업3	거실 : 우물천장 4면 우물천장 일체형 직간접 조명 (디밍/색온도 조절 포함) 침실 : 직부등+간접조명 (감성등) 거실/침실 : 커튼박스 간접조명 설치				1,980,000	2,160,000	주방 수납강화형 옵션 선택 시 선택 가능

※ 추가선택품목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위치지정 및 마감재 선택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선택시 스위치 스타일업 품목 : 거실, 침실(디밍+색온도 조절), 스타일업 스위치 적용

■ **마감재 스타일업**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9A	59B	59C	74A	84A	
마감	바닥 마감재	인테리어 바닥 마감재	2,550,000	2,470,000	2,390,000	3,010,000	3,410,000	-

자재	스타일업 벽 마감재	거실아트월 인테리어 벽 마감재	440,000	420,000	400,000	500,000	540,000	
		벽 마감재 스타일업 1 인테리어 벽 마감재 (현관/복도/거실/주방 벽마감재+가구판넬 +복도/거실 일부 픽쳐레일)	2,910,000	2,890,000	2,830,000	3,180,000	3,360,000	74A/84A 주방 공간옵션 미선택 시 선택 가능
		벽 마감재 스타일업 2 인테리어 벽 마감재 (현관/복도/거실 벽마감재+가구판넬 +복도/거실 일부 픽쳐레일)				2,830,000	3,040,000	주방 공간강화형 옵션 선택 시 선택 가능
		벽 마감재 스타일업 3 인테리어 벽 마감재 (현관/복도/거실 벽마감재+가구판넬 +복도/거실 일부 픽쳐레일)				2,570,000	3,050,000	주방 수납강화형 옵션 선택 시 선택 가능
	시스템선반	팬트리 시스템 선반	450,000	450,000	250,000	670,000	770,000	74A/84A 주방 공간옵션 미선택 시 선택 가능

※ 공간별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본 공사시 바닥재/벽마감재의 무늬와 색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스타일업 아트월 및 벽마감재의 나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스타일업 벽마감재 유상옵션 미선택시, 벽지가 시공되며 하단의 걸레받이가 설치됩니다.
※ 타입별 스타일업 벽마감재 설치영역이 상이합니다.
※ 바닥 마감재 유상옵션 선택 시 바닥에 물기 등이 묻어있을 경우, 미끄러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 및 줄눈 등의 오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스타일업 벽마감재의 패턴은 일정하지 않아, 본공사시 견본주택과 패턴이 다를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위치지정 및 마감재 선택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일정**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	계약시	2027.03.24	입주시(입주지정기간 내)
납부비율	10%	20%	70%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비용(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시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여야 함)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지정일에 납부하며,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위치지정 및 마감재 선택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품목별 일괄시공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공정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 추가선택품목 중 일부품목은 주택형(타입)별 사양이 다르므로, 해당 주택형(타입)의 형태를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선정 시 동·호는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추가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추가선택품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위약금 등에 대한 상세내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기재하고 체결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 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욕실 배기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이며, 위치이동, 추가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에는 스탠드형 에어컨, 침실1에는 벽걸이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 매립 배관이 기본으로 설치 될 예정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쪽의 냉매배관 및 응축수배관이 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수량에 따라 실외기 개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 해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바람 토출구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외부 온도 대비 5도씨 이내로 설정하며 바람 세기를 강풍으로 바람 날개 방향을 좌우, 상하 반복하여 움직여서 가동해 주시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는 견본주택용 전시용품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은 변경되며 위치는 무관합니다.
※ 제조사 및 사양에 따라 실내기 또는 실외기 규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단종(성능개선, 디자인 변경 등의 사유)시 동 제조사의 동급이상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조사의 제품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수준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고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으며, 입주 전에 안내형식으로 고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상품구성, 제품모델, 디자인(색상포함), 설치위치,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품목(가전,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디자인(색상포함),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공정상(발주 및 설치)의 사유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의 공급계약이 불가합니다.
※ 인덕션쿡탑 선택 시 렌지후드 상부장 내부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덕션쿡탑 선택 유무와 상관 없이 상부장은 수납 목적이 아닌 후드 장비 및 하이브리드 자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가전과 붙박이가구 설치시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붙박이가구 품목의 가구 수납형태 및 내부 구성과 규격은 주택형(타입)별, 해당 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가구의 디자인, 내부구성,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 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믹타일 (주방상판, 주방벽, 아일랜드 상판) 설치 시 분절 시공될 수 있으며, 이음매가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욕실 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복합 환풍기 내 욕실팬 기능 있음)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의 리모컨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본 공사 시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쿡탑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가스쿡탑은 설치 및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차감 정산하였습니다.
※ 인덕션쿡탑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됩니다.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및 침실의 디밍 제어시스템은 입주 후 조명기구 및 스위치 교체 시 기능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한 가구 또는 평면 변경에 따라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천장기구(조명 포함)의 규격,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 시공하는 품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공사와 무관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에 한계가 있고, 전품목 전시 불가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상세한 설명과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이후 제품 특성상 시장 판매가가 감액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차액이나, 감액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견본주택 및 홍보물상의 이미지와 실제 입주 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미기재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시 안내 후 계약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공통

※「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창호, 바닥재, 벽, 천장, 조명기구, 욕실기구, 주방가구 등)에서 계약자가 직접 일괄 신청시 해당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선택은 불가합니다.)

▪ 품목상세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문선,목재공틀 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디지털도어록(현관), 실외기실 문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일반형 도어록), 방화문틀 및 문짝, 내·외부 PL창호, 주방 터닝도어, 실외기그릴창
② 바닥	강화합판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바닥재,마루귀틀),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방수(방수 시공부위만 해당),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경량벽체(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는 제외),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 벽 도장, 거실 세대단말기(Wall Pad)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장, 등박스, 반자돌림	경량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 도장, 환기시설, 스피커
⑤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욕실전등, 인조대리석, 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장재(천장틀포함), 샤워부스, 욕실팬, 비상콜, 욕실수납장, 액세서리 일체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배관·배선,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레인지후드,음식물탈수기), 벽타일, 액세서리류 일체, 수전(절수기 포함)	석고보드, 소방관련 시설,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⑧ 일반가구	신발장, 팬트리(시스템 선반 포함), 드레스룸장(시스템선반 포함), 반침가구(문짝포함), 선반을 포함한 수납장, 화장대 등 가구일체	-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 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공제 금액 (단위: 원)

타입	59A	59B	59C	74A	84A
금액	30,254,000	30,396,000	30,396,000	37,486,000	39,840,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세대별 공급금액(공동주택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옵션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 납부 금액 (단위: 원)

타입	59A	59B	59C	74A	84A
금액	5,621,000	4,985,000	5,840,000	6,330,000	6,898,000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 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지정 계약 기간에만 선택 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 및 변경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외부 PL창호는 모두 설치되나,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 (입주지정 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 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 작업 시 관리사무소 등에 사전 신고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이웃 세대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아파트 사업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인서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사업 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주방용 자동소화 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 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 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대금 납부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마이너스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 (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 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마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 자재(대리석, 타일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옵션 금액이 적용된 분양금액(분양대금에서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감 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 (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되므로 이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 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 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 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1-5.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사업주체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이 경우 이율 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2-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부천대장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부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경기도 ·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11.12.)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부천시)	30%	· 공고일 현재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5.11.12.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천시 거주 ('25.11.12.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경기도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6.05.12.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6.05.12. 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되, 공급세대가 최소물량(3세대 미만)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경기도→타지역 순으로 배정합니다.

※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부천시 1년 이상 계속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11.12.)	① 경기도	50%	·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단, 남는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25.11.12.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천시 거주 ('25.11.12. 전입한 경우 포함) 단, 남는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6개월 미만)·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경기도에 우선 배정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6.12.01.)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 지역균형발전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혼인신고 전)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해당 조항의 소명자료로 해당 건물이 속한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할 경우, 해당 서류에는 반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함' 등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 외(발급기관 자체 양식에 따른 해당 문구 미포함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하며, 소명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에는 불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2-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자산보유기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보유자산 기준시점 등)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4항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3">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215,500천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건 물</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r><td colspan="2">시설물</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r><td>자동차</td><td>45,420천원
이하</td><td colspan="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td></tr>
</table>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①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②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건물+토지)	**237,050천원 이하**	**258,600천원 이하**	**215,500천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참고
자동차	**49,960천원 이하**	**54,510천원 이하**	**45,420천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단,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한 단순 열람용 서류 인정 불가
 - 온라인 조회 시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별도 확인 필요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5년식 자동차를 2024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2-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60㎡ 이하)	신생아 우선공급(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우선공급(1순위자)(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다자녀가구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노부모부양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생애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신혼부부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배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신생아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배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 원]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6,780,387	7,921,982	8,394,287	8,915,637	9,436,987	9,958,33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2,054,021	14,083,523	14,923,176	15,850,021	16,776,866	17,703,7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12,807,397	14,963,743	15,855,875	16,840,647	17,825,420	18,810,19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5,820,902	18,484,624	19,586,669	20,803,152	22,019,636	23,236,1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6,574,279	19,364,844	20,519,367	21,793,779	23,068,190	24,342,602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다자녀 ·신생아 특별공급, **일반공급(60㎡이하)**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일반공급(60㎡이하)**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휴직자 본인의 정상근무기간 소득을 조회·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3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3-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 제27호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추천기관
지자체(부천시 철거민), 인천보훈지청(국가유공자), 지자체(장애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국방부 국군복지단(10년 이상 복무군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 **기관추천 배정세대수**

구분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지자체 철거민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59A	5	3	2	2	7	3	2	12	36
59B	3	1	1	1	4	2	1	6	19
59C	1	-	-	-	-	-	-	1	2
74A	1	-	-	1	1	1	1	2	7
84A	3	1	1	1	4	1	1	6	18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11.23.)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지역균형발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3-2.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공급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필요 없음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해당 시·도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11.23.)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다자녀가구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의 시·군·구가 속한 시·도(경기도)** 거주자에게 50%**(단,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남는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의 시·군·구가 속한 시·도(경기도)** 거주자에게 50%**(단,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남는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 요소	총 배점	배점 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0명	0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해당없음	0	
무주택 기 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없음	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미거주	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해당없음	0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단,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무관)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하고 25세에 혼인)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3)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25세에 혼인 이후 소유하던 주택을 26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3-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노부모부양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특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2단계 추첨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3-5.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포함)]**가 있는 분**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생애최초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생애최초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혼인신고일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1인 가구 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신청자의 태아 포함))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가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 후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3-6.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9.11.12.~2026.11.12.)이거나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신혼부부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신혼부부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예비신혼부부 제외)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특례 및 출산특례 중복 적용은 불가하므로, 청약 신청 전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청약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출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로 확인합니다.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가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해당없음	0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0명	0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3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3년 초과 5년 이하	2	
	5년 초과 7년 이하	1	
	7년 초과	0	
바.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3세 미만)	3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2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1	
	해당없음	0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예비)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예비)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마.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3-7. 신생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 시작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빙서류는 공적 서류 및 금융기관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신생아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신생아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해당없음	0	
나. 미성년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 원]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미성년 자녀의 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생아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3-8.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우선공급 (1순위자)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③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분**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2. 신청기준의「2-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 한정)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 물량**을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주택타입)별 공급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

림)를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2. 신청기준의「2-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 한정)를 대상으로 **주택형(주택타입)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 물량**을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 시작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부천시, 경기도,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4 신청 시 확인사항

4-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인증서 인증→ 조회기준일 입력→ 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2. 전매 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6.12.01.)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4-3. 거주의무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여**됩니다.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거주의무 개시일부터 3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4-4.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제3호)	10년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5.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4-6.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참조)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7. 예비입주자 등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견본주택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변경 및 사업주체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2. 신청 기준'의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5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5-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2026. 11. 23.(월) (09:00 ~ 17:30) ※ 방문신청 시 (10:00 ~ 14:00)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가능)**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
일반공급	• 1순위	2026. 11. 24.(화) (09:00 ~ 17:30)	**인터넷 신청**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및 모바일앱
	• 2순위	2026. 11. 25.(수) (09:00 ~ 17:30)		

※ 모바일(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①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방문접수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가 가능하고 ②일반공급은 청약통장가입은행 본·지점(창구 접수시간 : 09:00~16:00)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2. 신청 시 유의사항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지역균형발전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및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6-1. PC인터넷·모바일 신청 (기관추천(국가유공자) · 지역균형발전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td><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able>
<tr><td>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td><td colspan="2">-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
서비스</td><td>청약홈</td><td>-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2.01.(화) ~ 2026.12.10.(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td></tr>
<tr><td>문자</td><td>- 제공일시 : 2026.12.0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부천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부천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순위확인서 발급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7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7-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서류 제출	공급계약 체결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
2026.12.01.(화)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2026.12.04.(금) ~ 2026.12.11.(금) (10:00 ~ 17:00)**	**2027.01.25.(월) ~ 2027.01.29.(금) (10:00 ~ 17:00)**	추후 일정 별도 안내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 견본주택 **※운영방식(예_방문예약)은 차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예정입니다.**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 특별공급(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지역균형발전,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상기 해당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사업주체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에도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하여야 하므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7-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서약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세대구성원	**※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당첨자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또는 출산특례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필수 제출
		○		배우자, 세대구성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이 만 18세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11.12.)**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세대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23.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등 양육사실 확인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통장사본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급여 수령 내역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공공주택 60㎡ 이하의 경우)[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하여 필수 제출('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특별공급(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지역균형발전,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당첨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지역균형 발전 특별공급)	○		서약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세대구성원	**※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만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당첨자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또는 출산특례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필수 제출
		○		배우자, 세대구성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이 만 18세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11.12.)**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세대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출산특례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출산특례 관련] 2세 미만 자녀,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출산특례 관련]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23.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4.06.19.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출산특례 관련]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등 양육사실 확인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통장사본	본인 또는 배우자	• [출산특례 관련] 급여 수령 내역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출산특례 관련] 출산특례를 적용받아 해당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한 경우 필수 제출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제2호에 따라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 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08.1.1.전에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11.12.)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의「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만 해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제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예비신혼부부 서약서	본인 및 예비배우자	• 접수장소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예비)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 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전 사업주체에서 제공하는 양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전 재당첨, 주택소유사실 여부 확인
		○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 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9>**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아래 <표9> 참고)		
신생아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하여 **필수 제출**('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전 당첨 여부 확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세 미만 자녀를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담당의 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등 확인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통장사본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급여 수령 내역 확인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 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로서 견본주택에서 현장접수하는 경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상기 구비사항 외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표9>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사본 불인정)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 (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 또는 스캔본으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제출서류 ※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재직증명서 등),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상기 단신부임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7-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자격검증서류 일체	본인	• 당첨유형별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당첨자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요구하는 서류까지 모두 제출한 것을 말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 도장과 일치해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으로 대체
	○		계약금 입금 증빙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전자수입인지	본인	• 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전자수입인지 구매 -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우편물 취급소 불가), 은행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 시 사본 첨부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만 해당)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8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8-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견본주택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 따라서, **현장계약 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포함)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유이자 조건(대출이자 계약자 직접 납부)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에서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 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융자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이자(현행 7.5%, 변동 가능)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 할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체,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적격대출 시 사업주체, 시공사는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계약자는 사업주체,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7.5%, 변동 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인지세 제외)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 시 발생하는 제부담금(인지대 및 주택보증수수료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분양상담사는 분양 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서 알선하는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2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리는 동일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금융권을 알선할 예정이나 은행별 금리적용기준 차이로 총 발생이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 불가 등) 또는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 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8-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8-3.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제공대상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주방	좌식 씽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 센서등	
욕실	수건걸이 높이조절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1개소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 **(2027.01.25.~2027.01.29.)**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8-4.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여건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 고시(제2025-669호)로 변경 승인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4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도로선형 변경, 승인, 조건 이행,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 상위계획 변경, 민원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및 사업여건 등에 따라 추진일정 및 사업준공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각종 기반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 문화시설 등에 대한 계획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용지 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생활편익시설인 학교, 유치원,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등은 해당 기관 여건에 따라 입주 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별 추진계획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지구 내에는 통합공공임대, 고령자복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공분양, 민간임대, 민간분양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자의 사정으로 에너지공급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대장-홍대선 철도노선 역사 2개소가 위치하며, 해당 사업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와 별개 사업으로 철도공사 일정에 따라 개통시기가 연기될 수 있으며, 공사·운영 등에 따라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 위치한 오정로, 소사로, 봉오대로, 벌말로, 경명대로 등 도로에서 소음, 빛공해,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평가 등으로 확정된 철도시설, 도로시설, 환승시설 등은 국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통행제한) 및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 소음저감시설(방음벽 등)은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제영향평가 등의 변경에 따라 추가 또는 설치 위치, 제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외 북측 김포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항공기의 이·착륙에 따른 저공비행으로 인한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외 북측 군사시설(탄약고)이 위치하여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외 서측으로 국가하천(굴포천), 지구 내·외로 소하천 4개소(여월천, 베르네천, 오쇠천, 고리울천)가 위치하며, 해당 시설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외 구간 소하천 정비사업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별개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 일정에 따라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영구저류시설(저류지 2개소)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홍수 등 비상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수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해영향평가 등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로등, 공원 등,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지구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 통신,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구 외 오정물류산업단지, 지구 내 부천대장제1,2도시첨단산업단지(예정)가 위치하여 교통문제, 분진 및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주변 부천대장안지구,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계획되어 있어 해당 사업 추진에 따라 교통, 분진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외 북서측 굴포하수처리장(북부수자원생태공원), 부천시 자원순환센터(폐기물 소각 및 음식물 처리 등) 등 환경기초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악취 및 소음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특수학교, 공영차고지, 석유, 전기, 수소연료 충전이 가능한 주유소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내 유보지가 위치하며, 유보지의 용도는 추후 결정 예정입니다.
- 지구 내 임시송전선로 및 임시송전철탑(154kV)이 위치하고 있으며, 송전선로 지중화 완료 이후 철거 예정('28년 이후)이나 관계기관 협의, 현장 및 사업여건 등에 따라 추진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신설학교 배정 및 인근 학교 배치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관청(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내·외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 확정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청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외 유해시설, 혐오시설 유무 및 위치,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등에 표시된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동측에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서측에 공공주택용지, 남측에 복합시설, 북측에 유보지, 북동측에 특수학교, 남서측에 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입주시 조성공사 및 주변 아파트 단지공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도로시설공사 등에 의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통행제한),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용 가설휀스,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개발계획은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의해 향후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접 도로의 진출입구 및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노상 시설물(가로등, CCTV, 소화전 등),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안내표지판 등은 관할 지자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보행 및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형여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부 구간에 난간, 옹벽 등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 옹벽 및 단지내·외 보도 및 차도포장 재질 등은 지구단위계획 법령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에 위치한 공원은 현재 미확정된 상태로 추후 공원 입구, 공원로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지 서측에 직접 면한 공공보행통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 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소음저감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 여월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악취, 해충, 홍수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되어 난간이 설치되지 않으며, 그 외 도로에 접한 대지경계부의 보도는 비상차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 주변의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사업 진행에 따라 지구 내 도로는 단계별 개통 예정으로 입주 후 교통 통행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본 단지의 주차장 설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주차대수 (세대당)	구분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아파트 총 658대 (세대당 1.2대) 근린생활시설 2대	지상	-	-	-	2	-	-
	지하1층	215	20	70	-	-	-
	지하2층	353	-	-	-	-	-

* 장애인 주차구역은 동출입구 주변, 전기차 주차구역은 화재시 소방활동에 유리한 위치에 배치하였으며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에 설치 예정인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7대, 완속충전기 27대, 콘센트형 36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대수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각 동별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까지의 동선, 거리, 충전시설의 종류,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비용(전기요금 등) 부과 및 운영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어 있고 휀룸 상부 지상에 환기탑(DA)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 먼지, 매연 등으로 보행에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환기탑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일부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동 출입구 가까이 배치된 주차계획(확장형 주차, 장애인 주차, 경차주차, 전기차 주차 등)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일반 및 장애인용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제연휀룸, 기계·전기실, 환기탑(DA), 채광창, 옥외계단실 등 마감, 위치, 형태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 및 회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부위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됩니다.
- 지하주차장 내 교차로 및 일부 차로에서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주차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및 트렁크 물건 반입, 반출 시 지하주차장 벽체나 기둥에 간섭되어 차량도어 개폐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배면, 측면에 시공될시에는 주차라인 마킹 시공 제외됩니다.
- 지하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각 동 통로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진입시 회차 차량과 진출 차량은 아파트 진입 차로와 합류 계획되어, 이로 인한 교통주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 동(201동, 208동)에 소음 및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단지 주 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및 매연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 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각 1개소가 설치됩니다.
- 문주는 201동, 208동 주변 남측 정문 출입구에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이동, 크기 변경, 추가 설치는 불가하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 외관, 주현관, 지하주차장 출입구, 조경 및 기타 시설물은 유관기관 협의 결과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에 대한 요청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각 층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 위치는 아파트 동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부 동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층의 엘리베이터 홀 및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구조 변경이 금지되며, 세대가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측벽, 동 출입구, 주민공동시설 등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강우 시 소음 및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연결송수관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단지 내 기반시설이므로 위치 이동 및 크기 변경에 대한 요청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펌프실 및 저수조실은 207동, 208동 인근 지하에 계획 및 설치됨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전·후면 혹은 측면에 제연휀룸 급기구가 위치하고 있어 미관저해,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지역난방지구입니다. 따라서 입주민의 개별적인 취향에 맞춘 고온의 바닥난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 세대 및 보행자는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합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 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를 제외한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 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는 단지 내외 차도, 보도, 조경수목, 기타 시설물 등의 계획으로 인해 사생활, 조망,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차 전용도로 및 구역의 위치,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을 준수하여,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B1F 2.7m B2F 2.3m입니다.
- 지구단위계획 법령에 따라 단지 경계부에 담장이 설치되지 않으나, 단차 구간 등에는 입주자 안전을 위해 난간, 담장, 계단, 경사로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조경시공계획 변경시 추후 식재 및 시설물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각동 전·후면 조경공간에는 식재가 제한될 수 있으며,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붕은 평지붕으로서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거동, 공용시설물, 옹벽 및 석축 등의 폭, 높이, 위치 등으로 일조,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 및 그 외 시설물의 외벽체 문양과 색상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동 현관 및 필로티 출입구, 저층부 외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당사 디자인특화계획 및 시공여건, 인허가 등에 따라 디자인, 형태, 크기, 색채, 재질 등이 각기 다르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고 일부 세대는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사 전 반드시 이사업체의 현장 확인을 요청하

여 사다리차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입주시 선정한 주택관리업체는 주거와 비주거의 통합 운영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구성원 결정에 따라 별도 관리업체에 인수인계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관리는 공동주택과 별개로 관리되어, 관리업체도 공동주택업체와 상이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결정에 따라 운영되며 공동주택과 무관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제반비용은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됩니다.
- 입주 후 경관조명, 수경시설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홈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지자체 요구나 수요조사에 따라 미건립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대)는 주거동의 위치를 감안하여 균등하게 설치되며 위치 변경에 대한 요청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대)는 일부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고, 일부 동 인근에 설치되어 냄새 및 해충, 소음, 분진, 폐기물 수거차량 운행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 변경에 대한 요청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절창고는 동별로 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 수량 요청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계절창고는 각 동 지하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단지여건 상 동별 세대수 비율과 관계없이 설치되므로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의 계절창고를 사용하지 못 할 수 있고, 온습도에 민감한 물품은 보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거동 기단부 외벽 마감은 동별로 높이, 재질 및 줄눈을 포함한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에 대한 요청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명, 동표시, BI, 벽체줄눈 및 색채 등은 추후 관계 기관의 심의 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 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차 전용도로 및 구역의 위치,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청약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옥상 난간은 금속난간과 콘크리트 난간 조합으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공사완료 및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난간, 태양광 설비 등 구조물(시설물)로 인해 강풍 및 우천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1층에는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어,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휴게공간 등의 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시설은 입주 전후 한시적으로(최대2년) 입주지원시설 및 A/S센터 등으로 사용됩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문주, 식재, 바닥포장, 조경관련 식재, 수목, 시설물,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은 청약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의 인허가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주변환경,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벽체, 기타 설비, 세부 디자인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재료, 형태, 크기, 재질, 색채, 위치, 패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단지 여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의 경우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 차단기 설치 위치 및 버스 정차 구역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차량 입차로 및 출차로 계획은 교통영향평가 등 교통계획에 따라 차로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도로 선형은 유선형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E/V 승강로와 인접되어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 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205동, 206동 인근 지하층에 전기실, 발전기실이 위치하고 발전기실 상부에 환기구(D·A)가 설치되어, 저층 세대에 시야 차폐가 발생할 수 있고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열풍 및 매연이 일부 세대와 보행자 통로 주변으로 전달되어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고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단지배치도 참고)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7동, 208동 주변에 저수조, 열교환기실 및 펌프실, 근린생활시설의 소화기계실 및 소화수조가 위치하여 상부에 환기구(D·A)가 설치되어, 저층 세대에 시야 차폐가 발생할 수 있고 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열풍 및 매연이 일부 세대와 보행자 통로 주변으로 전달되어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고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단지배치도 참고)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 설비인 한전 PAD 스위치 및 PAD 변압기가 단지 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인접 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우수 및 배수를 위한 맨홀 및 배수구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는 입주 단지의 관리 영역으로 주변의 낙엽 등 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 주민공동시설의 내부는 단지 내 보안등 및 방범CCTV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에 MDF실, 키즈스테이션(통학차량 승하차 대기공간),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 키즈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이 위치하여, 소음, 악취 및 거주권(사생활 침해, 환경권, 조망권 등)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주차구획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208동 인근에 설치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204동, 4개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 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으며, 빛반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층 및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 보호 설비가 설치됩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정해지며, 204동 지붕에 방송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동, 207동, 208동 아파트 옥상에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인근 아파트 세대 내부로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 내용은 계획이며, 지자체 협의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타입)이라도 동호 라인에 따라 평면이 대칭되거나, 창호의 개폐방향이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관련 유의사항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단지배치도,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조경컷, 모형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옵션품목은 제조사, 형태 및 마감재(하드웨어, 색상, 재질 등) 설치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옵션품목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거실 시각경보기 등은 전시품임)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유사색상 및 유사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의 품절, 품귀, 수급・생산불능 및 제조회사의 부도・파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동등 성능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성능 향상 등을 위해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석재,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팸플릿 등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사항이며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및 옵션품목 선택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강우 및 강풍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단위세대/공용부의 창호 및 난간의 제작사, 사양, 위치,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옥외시설물 및 사인물 등은 인허가 과정 및 당사 기준 변경,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저층부 외부 마감은 석재마감(필로티 내부, 계단실, 엘리베이터 제외) 및 도장마감 적용 예정이며, 석재적용구간은 주거동의 크기에 따른 비례감과 조화를 고려하여 너비는 동마다 상이하게 적용하였으며, 높이는 3개층 적용됩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저층부 석재 시공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별화 및 기능 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붕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파라펫,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AL창호, 강화합판마루, 조명기구, PVC배관 등은, 팸플릿 및 견본주택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치되는 스마트홈 생활정보기는 일괄 소등(현관 및 현관창고 센서등 제외), 엘리베이터 호출 및 가스 차단 기능을 하며, 화면에는 현재시간 및 외부날씨(온도, 미세먼지 정보)가 표현됩니다.
- 세대 내 동작감지기의 경우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침실, 거실의 창호 측면 천장 부위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의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 천장부 1개소에 설치됨(최상층 발코니 부위는 벽부형)
- 세대 내 주택용 분전반과 세대 단자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점검이 쉬운 벽체에 설치되고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설비의 환기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는 제품설명서에 따라 필터점검 또는 교체가 필요함(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다용도실 천장에 주방 배기용 덕트가 설치됩니다.
- 소방관련법에 따라 제연설비는 엘리베이터 전실에 제연급기 그릴이 설치되며,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소방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일부 세대 내 차압측정공이 설치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음
- 공간계획에 따라 혹은 시공 과정에서 현관, 발코니, 엘리베이터 등 공간별 바닥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되나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경량벽체는 칸막이 구조로, 인접한 거실 또는 침실, 욕실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타일 및 석재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뒷면과 주방가구 뒷면, 붙박이장, 신발장 뒷면, 조명기구 윗면 및 바닥, 천장은 마감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 대상이 아닙니다.
- 석고보드 설치 공법 상 이음부위 테이핑 시공 시 일부구간 평활도가 고르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벽체 및 천장에 음영이 질 수 있으며 이는 하자 대상이 아닙니다.
- 욕실 출입문 및 천장재는 ABS 재질로 시공되며 천장에 점검구 시공 예정입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부속품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 대상이 아닙니다.
- 각 실 및 욕실 등에 설치되는 환기구 및 환기장치, SP헤드, 박스류(수전함 등)의 설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세대 아트월 부위는 경량벽이 있으므로 경량벽체 부분에 설치시 별도 보강을 실시해야 합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어,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등 중량물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욕실 양변기는 절수형이 설치되므로 세정력이 다소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악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배수드레인)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장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타입 및 옵션 선택으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욕실팬 작동 시 냄새 역류방지를 위한 전동댐퍼가 연동하여 작동되며 댐퍼 및 팬 작동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 직배기 배관으로 인하여 세대 내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관토출을 위하여 침실 등의 커튼박스가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 내부는 직상층 세대 화장실의 배관이 통과하므로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욕실 천장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쿡탑 추가선택품목 선택여부에 관계없이 전 세대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됩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의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는 공간은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또는 하부장에 PD점검구용 캡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하부장 일부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 합니다.
-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으로부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후면 또는 측면에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내부에 별도로 시공되며,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에서 배출되는 열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세대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되며, 별도의 마감재 없이 노출 시공됩니다.
- 실외기실 도어가 실내(다용도실, 드레스룸 등)로 열림에 따라, 실내가구와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 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우천시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한 관리(청소 등)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해야합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급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흡입,배출구)는 거실과 침실 등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시 소음,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가동 전에는 그릴을 개방하고 실외기 주위에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하며, 그릴 미개방 시 실외기실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재 발생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 개방으로 인한 수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비난방 공간이므로 겨울철에 에어컨 실외기 그릴 개방 등에 의한 외기 유입으로 수전류 등에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주의를 요합니다.
- 비상대피를 위하여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고, 별도의 대피공간은 구획되어 있지 않으며, 필로티 및 주민공동시설의 상부층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206동 301호, 302호, 208동 304호의 실내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 및 지자체 협의에 따라 다른 세대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접 창호가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실내 돌출물로 공간사용에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상부 세대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 전개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물건 적치가 불가합니다.
- 세대 내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므로 화재 등 비상시에만 개방하여야 하며, 임의의 피난구 개방에 따른 경보음 발생 및 인접세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해야 함. 또한, 천장에는 상부 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 상부에 전열교환기가 하향식 피난구 위치에 따라 층별 교차 설치됩니다.
- 실외기실의 하향식피난구는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자재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발코니에는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 및 침실1에 매립되는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침실1의 에어컨실내기 매립박스는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형박스가 노출될 수 있음 (침실1은 냉매박스 설치 및 도배 후 스티커로 위치 표시)
- 세대 내 시스템에어컨(선택품목)은 거실 월패드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일부 발코니(또는 다용도실)에 자동빨래건조대가 설치되며, 자동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은 자체조명이 리모컨 스위치로 점등되며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자동빨래건조대 조명기구는 LED 등으로 임의탈착이 곤란할 수 있음)
- 자동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실외기실 도어와 일부 간섭이 불가피하오니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향후 위치 이동은 불가합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다량의 온수 사용, 빨래건조, 가습기 사용, 겨울철 환기 소홀, 음식물 조리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다용도실 및 에어컨 실외기실 포함)는 대용량의 세탁기 및 건조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탁기 및 건조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사이즈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발코니는 마감재 시공으로 공간이 작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입니다.
- 초과발코니 면적은 발코니의 폭이 1.5m를 초과하여 돌출된 부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면적임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옵션 선택 이후, 입주민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 및 추가 설치 요청 등은 불가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선택하는 주방상판 마감재에 따라, 하부장의 높이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점이 발생되는 경우, 견본주택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사항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평형별, 세대별, 층수별, 주동별, 라인별 침실별로 창호 사양 (창틀, 하드웨어, 유리사양 등)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분할위치, 손잡이, 시스템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팸플릿, 모형 등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신청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품절, 품귀, 생산업체 부도 및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는 주택형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팸플릿, 견본주택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니 먼저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견본주택,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및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의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변경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현되지 않은 마감재는 팸플릿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 추후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입주자 부담 공사로 인한 하자 및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입주자 부담 공사로 인해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 제외품목 (소방관련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를 하여야 함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커튼박스 깊이, 길이, 단부 여장이 각 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냉매 매립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이며 공기청정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시공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신발장 등 가구 길이가 상이합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공사용 하드웨어 및 악세서리류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연 자재가 사용된 경우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결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모형도에 시공 및 표현된 현관바닥, 팬트리, 욕실, 주방, 발코니, 아트월 등의 타일 나누기 및 줄눈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종 붙박이 마감재(옵션 가구를 포함한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조, 욕실장 및 욕실 거울 후면 등)와 접하고 있는 벽, 바닥, 천장은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옵션제가 적용되어 옵션을 유무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는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하오니 옵션 선택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동일 타입이라도 동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 디딤석(마루귀틀) 및 주방 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이음이 발생합니다.
- 가변형 벽체(건식 고정 벽체)는 일반 콘크리트 벽체에 비해 소음 및 진동의 차단, 단열 성능 등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과정에서 일부 세대는 품질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실 출입문에는 손끼임방지 자재가 부착됩니다.(단, 다용도실, 실외기실 출입문은 제외)

■ 학교 개교 시기

학교	위치	학교명(가칭)	개교시기

유치원	유1	대장1유	2029년 9월
초등학교	초1	대장1초	2029년 9월
중학교	중1	대장1중	미정
고등학교	고1	대장1고	미정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대장1초'이며 학생배정 정책 및 여건에 따라 통학구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학교군은 '오정·역곡중학군'이며, 해당 중학군에 9개교가 있고 "부천시 중학교 신입생 무시험배정 지침"에 따라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 중학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천은 평준화지역 단일학군(교육감 전형)으로 고등학교 배정시 학교와의 거리가 아닌 고등학교에 대한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배정 방식으로 관리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인근 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유치원) 용지가 있지만 신설 학교(유치원) 개교(개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교육부(교육지원청)의 학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생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 용지는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유치원) 설립 여부 및 개교시기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진행상황, 분양률 및 입주시기, 학교신설 교부금 예산확보 시기, 공사일정, 학생배치 여건, 학생배치 계획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배치를 위한 교육여건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입주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통학구역 및 학군의 경우 학생배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별도의 통학편의(통학버스 운영 등)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초등학교 개교 및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입주예정 세대는 가급적 7~8월 중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시공기준 적용 주택(현장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건설, 운송, 가설장비, 레미콘 등)의 파업,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외 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불편 등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 여건의 반영, 구조·성능·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 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 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써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 및 구획은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 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계약해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모형은 공급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폐기할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계약 및 입주 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은행, 인터넷,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8-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구조 관련 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환경 관련 등급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과대한 지하개발 지양	–
	토공사의 절토·성토량(땅깎기·흙쌓기를 위한) 최소화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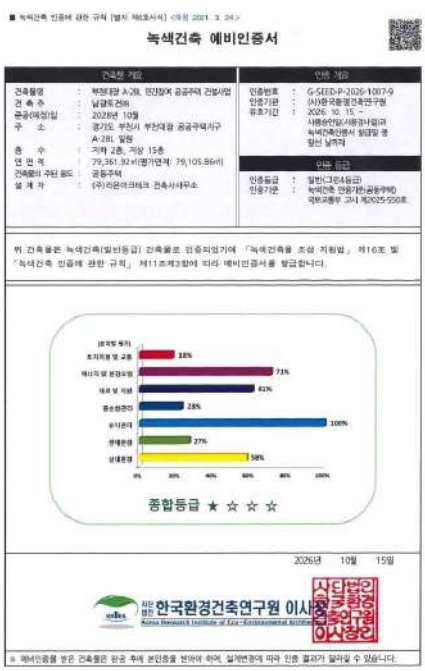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관리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생활환경 등급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범안전 콘텐츠	★
화재 · 소방 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본 공고문에 기재된 성능등급은 예비 인증 결과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현장여건 및 본인증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8-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

8-7. 마감자재 목록표

■ 「주택법」 제54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 홈페이지(https://www.부천대장하우스토리디센트.com)에 게시합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8-8.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주택법 제5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59,057,721
			기간이자	10,578,299
			필요적 경비	-
			그 밖의 비용	142,040
			계	169,778,060
건축비	공사비	토목	토공사	4,465,798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
			석축공사	-
			우·오수공사	324,880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248,182
			도로포장공사	442,986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11,868,748
			부대시설공사	5,760,248
			계	23,110,841
		건축	공통가설공사	4,851,546
			가시설물공사	2,063,024
			지정 및 기초공사	52,745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42,543,112
			용접공사	-
			조적공사	1,555,148
			미장공사	1,553,017
			단열공사	1,348,757
			방수·방습공사	1,529,941
			목공사	614,801
			가구공사	4,152,765
			금속공사	2,053,812
			지붕 및 홈통공사	1,294,624
			창호공사	2,980,936
			유리공사	843,155
			타일공사	1,984,411
			돌공사	1,726,986
			도장공사	804,139
			도배공사	745,914
			수장공사	982,532
			주방용구공사	-
			그 밖의 건축공사	638,434
			계	74,319,800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532,353
			급탕설비공사	354,902
			오배수설비공사	349,584
			위생기구설비공사	946,445
			난방설비공사	1,120,438
			가스설비공사	527,212
			자동제어설비공사	317,366
			특수설비공사	173,332
			공조설비공사	454,853
			계	4,776,484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7,067,675
			정보통신공사	2,693,116
			소방설비공사	4,951,956
			승강기공사	2,775,803
			계	17,488,551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28,704,517
			이윤	8,457,789
			계	37,162,306
	간접비		설계비	2,043,959
			감리비	1,408,316
			일반분양시설 경비	391,490
			분담금 및 부담금	157,173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6,216,259

		계	10,217,198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32,303,046
합계			369,156,285

8-9.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단위 : 원]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가. 하나감정평가법인	나. 제일감정평가법인
159,057,721,425	158,237,836,260	159,877,606,590

8-10.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단위 : 천원]

항 목			금액
택지비 가산비	기간이자		10,578,299
	방음시설 설치비		-
	필요적 경비		-
	기타비용		142,040
	계		10,720,339
건축비 가산비	법정초과복리시설설치비용		1,582,836
	공동주택성능등급 가산비		1,202,034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홈네트워크	4,332,111
		에어컨냉매배관	861,482
		초고속통신특등급	-
		기계환기설비	1,113,399
	친환경주택건설비용		2,751,368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전기자동차충전시설	173,534
		기타비용	-
	지하주차장층고증가추가비용		441,504
	사업승인부가조건 가산비		5,536,717
	기초지반공사비	말뚝박기공사비	6,694,149
		암석지반공사비	-
		흙막이및차수벽공사비	3,544,885
		지하공사	-
	안전관리비		233,463
	설계비		245,275
	감리비		3,590,286
	계		32,303,046

8-11.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설사업관리(건축,통신,소방 등)	전기 감리
상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유탑엔지니어링, ㈜건일엠이씨	㈜이지건축
감리금액	5,346,706,173	392,776,662

※ 감리회사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8-12.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구분	사업주체(공공시행자)	공동 사업주체(민간사업자 겸 시공사)				
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남광토건(주)	중흥토건(주)	㈜케이알산업	극동건설(주)	씨앤씨종합건설(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비122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04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42-1, 1층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1동 615호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9, 203호
법인등록번호	135671-0033355	110111-0017411	205511-0004135	171211-0002799	110111-0027858	135311-0004275

8-13. 견본주택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부천대장 A2블록 견본주택



■ 위치안내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 견본주택)
※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주차요금이 발생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 운영기간 : 견본주택 관람기간 및 현장 제출서류 접수기간 및 현장 계약체결기간
※ 운영기간 내 주말, 공휴일 방문 가능
※ 운영기간 변동 시 홈페이지 개별 안내 예정

■ 운영시간 : 10:00~17:00

사이버 견본주택	분양문의
■ 주 소 : https://www.부천대장하우스토리디센트.com	■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 견본주택 : 032-322-0548 (10:00 ~ 17:00)